

교과과정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교과과정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교과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학사관리과장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정책적인 교과과정 개정 또는 사회적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개정 및 관리운동을 주임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.

1. 본 대학교 교육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
2. 국제화 및 정보화 시대에 알맞는 교과목의 개발
3. 각 학부(과)별 교과과정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4. 교과과정의 학점 및 강의시간 수에 관한 사항
5. 교과목의 개정 및 특성화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6. 교과목 및 강의의 질적 향상과 개선에 관한 사항
7. 교과과정 운영과 각 전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8. 기타 각 학부(과)에서 상정하는 사항

제4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세부운영사항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교과과정위원회 규정(8-8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조, 제2조, 제6조)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